

<參考資料>

1. 特殊建物 火災現況

이번 號에는 그동안 화재현장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이재물건(약 20件)을 포함하여 지난 2개월 간('81. 7. 11 ~ '81. 10. 20)의 화재를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의 두드러진 현상은 전체 32件중 12件(37.5%)에 해당하는 화재에서 초기에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압활동을 전개하여 소화에 성공한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특수건물에서 초기소화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表 1. 용도별 화재발생 건수

用 途	件 數	累 計
4 층 이 상	7 (21.9)	51 (38.2)
공 장	10 (31.3)	35 (26.3)
공 동 주 택	10 (31.3)	31 (23.3)
시 장	3 (9.3)	8 (6.0)
호 텔	1 (3.1)	3 (2.2)
옥 판	-	1 (0.8)
학 교	-	1 (0.8)
국 유	-	1 (0.8)
공 연 장	-	1 (0.8)
병 원	1 (3.1)	1 (0.8)
합 계	32 (100%)	133 (100%)

表 2. 지역별 화재발생 건수

(80.12.2 ~ 81.10.7)

地 域	件 數	累 計
서 울	19 (59.4)	71 (53.4)
부 산	4 (12.5)	32 (24.1)
대 구	5 (15.7)	10 (7.5)
인 천	1 (3.1)	10 (7.5)
대 전	1 (3.1)	5 (3.8)
광 주	1 (3.1)	4 (3.0)
전 주	1 (3.1)	1 (0.7)
합 계	32 (100%)	133 (100%)

表 3. 特殊建物 火災發生 現況

일련 번호	용 도	건 물 명	지역	화재발 생 일	화재원인, 연소 및 피해상황	피 해 액
1	공동주택	동신아파트	대구	81. 6. 9	26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원인은 미상	372 萬원
2	시 장	서문시장 2 지구	"	6.10	경비원이 시장에서 연기발생하는 현장을 목격함과 동시에 자탐설비 및속보설비작동으로 소방서에 연락되고, 방재센터에 긴급 연락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소화	2,430,000

일련 번호	용 도	건 물 명	지 역	화재 발 생 일	화재원인, 연소 및 피해상황	피 해 액
3	공동주택	시영산격아 파트	대구	81. 6.15	착화탄 처리 부주의로 화재발생하였으 나 인근 주민이 조기 발견하여 소화 기로 초기진화하였음	143,150
4	4 층이상	대교여관	"	6:18	3층객실(308실)에서 선풍기 과열로 가연물에 인화하였으나 포말소화기로 진화하였음	100,300
5	창 고	동방유량(주) 대전사업소	대전	7. 4	식용유 저장창고에서 경보기가 작동하 며 현장에 도착하니 창고에서 불길 치솟고 있었다. 즉시 소방서에 전화로 연락하였다. 화재발생 건물은 낡은 목 조 건물로 방화구획 및 격벽이 미설치 되어 있었음.	2억 6천만원 (추정)
6	공 장	대량산업 공업사	부산	7. 9	1층 배합실에서 다량의 발포제를 미 리 혼합하여 적재해 놓아 장마철의 습 기와 압력을 받아 자연발화하여 폭발 함. 폭발후 1층 배합실과 로루실 그 리고 2층 제조과로 전파됨. 본건물은 신발류 제조업체로 건물내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연소 속도가 신 속하고 진화가 어려웠음.	15억
7	사 무 실	국전빌딩	서울	7. 9	인접 건물에서 발화하여 연소(延燒)	-
8	사 무 실	한국종합물 산(주)	"	7.12	낙뢰로 변압기 소손	-
9	공동주택	신안동 삼 익맨손	광주	7.17	아파트내 작은 방에 있던 가전제품(녹 음기)에서 발화하여 방 2개를 전소시 키고 화장실 출입문을 반소(半燒)시켰 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의 주 경종이 울려 관리실 직원이 출동하여 포말소화기 10개를 사용하여 진화하 였다.	434,320
10	공 장	한국아루마 공업(주)	부산	7.25	용해로에서 알루미늄을 용해하던 중 용해로 밑부분에 구멍이 생기며 용융 알루미늄이 흘러 내렸으나 건물내의 연소피해는 전혀 없었다. 피해상황은	870 만원

일련 번호	용 도	건 물 명	지 역	화재발 생 일	화재원인, 연소 및 피해상황	피 해 액
11	시 장	(주)부전시장	부산	7.26	로의 내화벽돌이 파괴되고 폭음으로 지붕의 슬래트가 파열되었다. 사고직 후 전원과 B-C 유 송유 파이프를 차단하여 그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층 점포에서 화염이 솟아 전화로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으로 진압중 소방차가 소방차가 도착하여 완전진압하였음. 화재 원인은 미상	51,112,800 (추정)
12	공 장	대영산업사	대구	7.26	낙뢰로 외부 전기설비로부터 싸이징기의 콘트롤 박스에 화염발생	5,273,925 (지급보험금)
13	호 텔	뉴용산호텔	서울	7.28	낙뢰와 함께 소리가 나면서 4층 변압기 손상됨	-
14	병 원	성베드루병원	"	7.30	밀폐된 분전반내에서 과열발화, 연기 발생을 간호원이 발견하여 자체 진화하였음(분말 소화기 5대 사용)	-
15	공 장	철신정공사	"	8. 1	밀폐된 분전반내에서 과열, 발화됨. 연기가 발생하면서 변압기에 전파됨	-
16	공 장	광양물산(주)	전주	8. 2	낙뢰로 인해 옥외 주상수전설비중 라인 스위치(L.S) 파손. ※ 81년 점검시 파손된 피뢰기 보수하여 낙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시정치 않았음.	약 1,150 萬 원
17	공동주택	약수맨션	서울	8. 5	요리중 잠시 주방을 비운 사이에 식용유 과열로 가스렌지에 넘쳐 흘러서 발화, 즉시 가스를 차단하고 ABC분말소화기 2대로 진화	약 100 萬원
18	공동주택	강동 2차아파트 70동 204호	서울	8.11	베란다에 있던 석유가 연소하면서 외벽부분과 창틀이 연기로 소손됨, 화인은 상층에서 던진 담뱃불로 인한 것으로 추정	-
19	사 무 실	대왕빌딩	"	8.13	주방의 기름솔 취급 부주의로 발화하여 Hood Duct 내로 연소됨	약 500 萬원

일련 번호	용 도	건 물 명	지 역	화재발 생 일	화재원인, 연소 및 피해상황	피 해 액
20	식 당	삼양빌딩	서울	81. 8.18	석유 버너 취급 부주의로 발화	-
21	창 고	풍진산업사	부산	8.25	본건물 직근의 가건물 창고에 Poly-ester Fiber(원면)를 다량 적재하여 보관중 야간의 휴식시간에 발화하였다. 화재신고와 동시에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진화하였음.	약1970 萬원
22	공동주택	주공아파트 62동 303호	서울	8.26	석유콘로 연소중에 기름을 부어 발화하였음.	약 70 萬원
23	공동주택	주공반포 2지구	"	8.29	방화로 추정되며 거실과 부엌이 전소되고 기타 부분이 반소됨	250 萬원
24	4층이상	태성빌딩	"	9. 6	인근 태창 전열(비특수 건물)에서 발화하여 당 건물로 화염이 전파되었으나 숙직자가 옥내소화전으로 연소방지에 진력하여 유리창문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경미하였음	약 50 萬원
25	사 무 실	뉴코리아관 광개발주	서울	9. 7	엘리베이터 전선 닥트내에서 전선의 노후로 인해 쇼트되어 전선이 손상됨	500 萬원 추정
26	공 장	주 삼 모	"	9.10	도장실 합판 간벽위의 형광등에서 발화	260 萬원
27	공 장	동양제지(주)	"	9.11	초지기 상부에서 산소용접중 초지기 상부카버 이면의 먼지, 기름 찌꺼기 등에 착화하여 연소확대되어 소화기 6대와 소화전(2개소)을 사용하여 초기 진화하였음	약 100 萬원
28	공동주택	남서울아파트	"	9.18	옥상에서 아이들이 불장난하던중 406호의 베란다 쓰레기 통속으로 불티가 떨어져서 발화, 창문을 통해 연소, 확대되었으나 아파트 경비원 5명이 포말소화기 5대로 진화하였음.	약 30 萬원
29	공 장	동진화성공업(주)	인천	9.18	공장에서 작업중 Ribbon Mixer 기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염이 발생하여 전사원이 소화기 및 옥외 소화전으로 진압 ※ 80년도 점검시 분쇄실	약1130 萬원

일련 번호	용 도	건 물 명	지 역	화재발 생 일	화재원인, 연소 및 피해상황	피 해 액
30	공동주택	암사시영 APT	서울	9.25	(배합실)과 전조실 사이의 배관 판봉부를 구획토록하여, 방화벽을 설치하였으므로 연소방지 효과가 컸음. 석유곤로사용중 과열발화하여 인접한 집기류에 인화	-
31	시 장	대홍상가	서울	10. 1	보일러 연료인 톱밤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발화	약 50 萬원
32	공동주택	삼부 APT	서울	10. 7	창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발견하여 다른 경비원 1명과 포말 소화기(6대)로 초기진화하였음 화재원인은 담뱃불로 인한 것이었음.	약 50 萬원

〔註〕 火災發生件數는 防災研究部에 '81. 7. 11부터 '81. 10. 20 까지 接受된 것임.

〔註〕 피해액은 火災調査報告書에 나타난 金額으로 지급보험금과 다를 수도 있음.

2. 世界 主要 火災史

(1) 모스크바의 大火

모스크바大火는 1554, 1736, 1739, 1748, 1753, 1812年 등 연달아 있었으나 일짜가 분명한 것은 1812년 9월 14일의 유명한 나폴레옹 遠征時의 것 뿐이다. 그러나 아마 다른 해의 大火는 대부분 6월경일 것이다. 그 이유는 레닌그라드의 大火나 또 北端의 아르한게르스크市的 것도 6월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6월은 년중 습도가 가장 낮은 시기이다. 이나라의 관계 습도에 대한 장기간의 기록은 없으나 6월은 그 前後月인 5, 7월 보다 雨量이 적으며 그 위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관계습도는 6월이 최저로 되어 있다.

1812년의 大火는 佛軍이 모스크바에 入城한 다음날 밤에 일어났다. 이것은 흔히 전해져 내려오는 말과 같이 佛軍을 困境에 몰아 넣기 위한 放火는 아니고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失火였다. 이 화재가 확대된 이유는 아무래도 습도가 낮았기 때문이겠다. 이 화재는 5일째에 진화되어 全市의 90%를 全燒하였다.